

교원 신규임용 세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의거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1.13>

제2조(응시자격) ① 우리 대학은 예체능 특성화대학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예·체능 및 특정분야(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 외의 경우는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5.2.1>

③ 예술계는 개인전시·공연 등, 기타계열은 전국규모 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연구 실적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200%이상이어야 한다.

제3조(전형방법) ① 전형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1차평가(전공 및 연구업적평가), 2차평가(강의능력평가) 및 3차평가(면접평가)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비정년계열전임교원과 외국인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자의 평가점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,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 평가위원들의 평가치가 판이하게 다를 경우 교학지원처장은 그 이유를 밝힌 사유서를 평가위원들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.

③ 전형절차 및 채용은 교원총원계획수립, 공고, 접수, 전형, 채용대상자 선정, 임용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.<신설 2015.1.13>

④ 교원수급계획은 기획조정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의하되, 채용분야와 인원은 교학지원처장이 총원계획을 수립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<신설 2015.2.1><개정 2017.09.25>

⑤ 총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채용분야, 채용인원, 지원자격,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,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단 전략적 총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다.<신설 2015.1.13>

제4조(서류심사) ① 서류심사는 교학지원처장 주관 하에 교학지원처에서 실시한다.

②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원임용지원서(본교 소정양식) 1부
2. 자기소개서 1부
3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및 성적증명서(평점평균 기재) 각 1부
4. 연구실적 목록(제목, 연구자, 발표년월일, 논문개요 기재) 각 1부
5. 최종 학위논문 및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 200% 각 3부
6. 외국 석·박사학위취득자는 석·박사학위신고 접수증(한국연구재단) 사본 1부<신설 2015.1.13>

제5조(전공 및 연구업적평가) ① 전공일치여부 평가와 연구실적물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.

② 전공일치여부의 평가는 [별지 제1-1호 서식]에 의거 지원자의 최종학위논문을 대상으로 50점 만점으로 한다.

③ 연구업적 평가는 200%의 연구실적물을 대상으로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거 100% 당 각각 5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를 환산 반영한다.

④ 전공 및 연구업적평가위원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학부장의 2배수 추천(전공주임교수 당 연직)으로 교학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1인을 포함시킨다. 외부 심사위원은 교학지원처장의 2배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전공교수가 없는 신설전공의 경우에는 교학지원처장이 교내 및 외부인사로 2배수를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5.1.13>

⑤ 예·체능계의 연구업적물은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기타사항은 교학지원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.

제6조(강의능력평가) ① 강의능력평가위원은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전공주임교수를 제외한 위원은 교무지원처장이 2배수를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촉된 강의능력 평가위원들이 임석 하에 공개강의를 실시하고, [별지 제2호 서식] 에 의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.

제7조(면접평가) ① 면접평가위원은 교학지원처장, 학부(과)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. 학부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학지원처장이 2배수를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5.1.13>

② 면접평가는 각 평가위원이 총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를 60점미만 또는 9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사유를 필히 명기토록 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<개정 2015.1.13>

제8조(총장평가) 서류심사와 1차, 2차, 3차 평가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여 올리면 총장은 임용 후보자의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, 인품, 대학에의 기여 예상도, 임용 후 주생활 거주지와 평가절차상의 오류 및 평가사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임용제청 동의 의결 후 이사장에게 채용인원의 2배수를 임용 제청한다.

제9조(특별채용) 특별채용은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최종합격자의 결정절차) ① 서류심사는 “가”, “부”로 결정한다.

② 최종 임용예정 대상자는 서류심사, 1차평가(전공영역 및 연구업적평가), 2차평가(강의능력평가), 3차평가(면접평가)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.

③ 최종 임용예정 대상자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한다. 단, 최종집계점수가 180점 미만인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④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.

1. 전공 및 연구업적평가 고 득점자
2. 강의능력평가 고 득점자
3. 면접평가 고 득점자
4. 연령순(연소자)

제11조(업무절차) ① 신규교원 임용 시 제반심사에 관한 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주관한다.

② 신규채용 심사과정 중 또는 심사 후에 당해 학부(전공)에서 채용유보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및 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3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1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실적물 평가표]

연구실적물 평가표

지 원 분 야						
학부(과)	전 공	지 원 분 야			성 명	비 고
평가연구실적물 제목						
평 가 내 용						
평 가 내 용	평 점				평 가 점 수	총 합 의 건
	A	B	C	D		
채 용 분 야 근 접 도	10	8	5	2		
학 문 적 기 여 도	20	15	10	5		
연 구 실 적 물 형 식 · 내 용	20	15	10	5		
합 계						
※ 평가방법 : 평가내용 평가점수 및 종합의견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, 200%의 평가물(연구실적물)을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						

년 월 일

심사위원 소 속

직 급

성 명

(인)

여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제1-1호 서식 전공영역 평가표]

전공영역 평가표

지 원 분 야							
학부(과)	전 공		지 원 분 야		성 명	비 고	
평 가 내 용							
평 가 내 용	평 점					평 가 점 수	비 고
	A	B	C	D	E		
전공(채용)분야 일치 여부	50	40	30	20	10		
심사요지 :							
※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논문을 평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

년 월 일

심사위원 소 속
직 급
성 명

(인)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 강의능력 평가표]

강의능력 평가표

지 원 분 야						
학부(과)	전 공	지 원 분 야			성 명	비 고
평 가 내 용						
평 가 내 용	평 점				평 가 점 수	총 합 의 견
	A	B	C	D		
강 의 내 용	20	15	10	5		
동 기 부 여 및 연 결 성	20	15	10	5		
강 의 능 력	20	15	10	5		
반 응 도	20	15	10	5		
교 수 자 료 의 활 용	20	15	10	5		
합 계						
※ 평가방법 :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점수 및 종합의견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
년 월 일

심사위원 소 속
직 급
성 명 (인)

여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 면접평가표]

면접평가표

지 원 분 야				
학부(과)	전 공	지 원 분 야	성 명	비 고
평 가 내 용				
평 가 내 용	평 가 점 수		평 가 사 유	
대 학 교 원 으 로 서 의 자 질				
교 육 발 전 에 기 여 가 능 성				
친 화 력 · 협 동 성 등 의 인 성				
신 체 적 건 전 성 및 건 강 상 태				
외 국 어 활 용 능 력				
※ 평가방법 : 5개분야의 평가내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점수를 기록하며, 60점미만 또는 9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사유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년 월 일

 심사위원 소 속
 직 급
 성 명

(인)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제1-2호 서식 연구업적 평가위원 추천서]

연구업적 평가위원 추천서

성명	
소속	대학 학부(과) 전공
직급	
상기자를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연구업적(전공영역)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.	

년 월 일

부 서 장 : (인)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제2-1호 서식 강의능력 평가위원 추천서]

강의능력 평가위원 추천서

성명	
소속	학부(과) 전공
직급	
<p>상기자를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()학부·과 () 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강의능력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.</p>	

 년 월 일

부서장(추천인) : (인)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 제3-1호 서식 면접평가위원 추천서]

면접평가위원 추천서

성명	
소속	학부(과) 전공
직급	
<p>상기자를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하여 ()학부·과 ()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면접평가위원으로 추천합 니다.</p>	

년 월 일

부 서 장(추천인) : (인)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예원예술대학교교수초빙지원서

1. 인적사항

초빙 전공분야		접수 번호		사 진
성명	인 (한자:)			
주소	우(-)			
주민등록 번호	-			
연락처		전화 번호	(自) (事) (핸드폰)	

2. 학 력

구분	학교명	학과명	전공	수학기간 (~)	학위명 (학위취득일)
고등학교					
학사					
석사					
박사					

3. 교육경력(교수, 조교, 강사 등의 경력)

임용기간 (~)	임용기관(근무처)	직명(직위)	담당직무	비고

※모든 경력은 증빙서가 첨부되어야함

4. 기타 경력

기 (~ 간)	임용기관(근무처)	직 명(직위)	담 당 직 무	비 고

※모든 경력은 증빙서가 첨부되어야함

5. 최종학위논문

논문종류	논 문 제 목	발표년월일	비 고

5-1. 최종학위논문 내용요지

※ 국문으로 작성

6. 연구실적물 목록

(석.박사 학위논문과 해당 전공분야에 일치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200% 이상의 모든 연구실적물을 연도순으로 기재)

일련 번호	논문종류	논 문 제 목	연구자	발 표 연 월 일	게 재 지 명	연구자수 (본인포함)

- ※ 논문종류는 학위논문(석.박사), 국내학회지, 국외학회지, 대학논문, 저서, 정기간행물 ... 등으로 표기
- ※ 연구자명은 원본의 순서대로 모두 기재할 것.
- ※ 게재지명은 정확히 기재할 것.
- ※ 연구실적의 내용 요지는 연구실적물별로 6-1의 양식에 A4 1~3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첨부할 것.

6-1. 논문내용 요지

일련번호	논 문 제 목

위의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, 만약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임용된 이후에도 대학당국의 임용취소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교수 초빙 지원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지 원 자

인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교원 신규채용 서류심사 조서

응시분야		학 력	대학교	학과	전공	
응시과목			대학원 석사과정	학과	전공학위	
응시번호			대학원 박사과정	학과	전공학위	
주민등록 번호			최종학위 논문제목			
성명						
학부성적						
경 력 사 항	연구경력	근무처	직명	근무시간	환산율	환산시간
		소계				
	교육경력	근무처	직명	근무시간	환산율	환산시간
		소계				
	총계					
	발표회 및 기타경력	구분	기간 (년, 월)			등위
서류심사결과		가		부		
작성자	(인)		확인자	(인)		

[별표1]

연구업적 평가 기준표

1. 인문, 사회, 예체능 전체 계열

연 구 실 적	기 준 점 수
1. 박사학위 논문	200 %
2. 석사학위 논문	100 %
3. 국내외 저명 학술지	~
4. 국외 번역 및 편저서	~
5.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	~
6. 국내외 학술상 수상	~
7. 국내외 전문서적	~
8. 학술자료집	~
9. 문화재 복원	~
10. 국가 포상 및 훈장(장관상 이상)	~

2. 예·체능계열인정 평가점수

분야별	연 구 실 적	기 준 점 수
미 술	1. 개인전	100 %
	2. 2인 이상 - 5인 이하 단체전	50 %
	3. 5인 이상 단체전	25 %
	4. 국제전, 대한민국 미술대전 1회 이상	100 %
	5. 도단위 이상 대회 심사위원	50 %
음 악	1. 독창회, 독주회, 개인 작곡발표회	100 %
	2.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 콩쿨 1위 입상	~
	3. 오페라 주연 1회	50 %
	4. 오페라 및 오케스트라(시립 이상 지휘)	~
	5. 오케스트라 및 실내악단과의 협연	~
	6. 2인 이상 - 5인 이하 발표회	~
	7. 도단위 이상 대회 심사위원	~
체 육	1. 국제 경기감독 및 코치로 출전	100 %
	2. 기타 국제대회 입상	~
	3. 도단위 이상 심사위원	50 %
무 용	1.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페스티벌 초청 발표	100 %
	2. 국내외 공인된 장소에서의 안무지도 및 개인 무용전 발표	~
	3. 국내외 공인된 장소에서의 안무지도 및 다른 무용단 의 합동발표	50 %
	4. 공동 안무 및 공동출연의 실적물 인정 환산율 1) 2인 이상 - 5인 이하 2) 5인 이상	50 % 25 %
연 극	1. 공인된 드라마 주연 출연	100 %
	2. 공인된 드라마 연출, 기획	~
	3. 연극 발표회 주연 출연	~
	4. 연극 발표회 감독 및 기획	~
	5. 공인된 드라마 조연 출연	50 %
	6. 연극 발표회 조연 출연	~

교수자격인정 심사규칙

가. 교원경력년수 환산표

경 력 내 용	환산인정률(%)
1. 교육경력	
가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
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	100
② 사관학교의 교관(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)으로 근무한 경력	100
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	70
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	60
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	50(단, 주당 5시간 이하는30%,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% 가산하되 50%를 넘지 못한다)
나.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
① 중·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(전문)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	50
② 3년제 고등 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	50
③ 초등학교 교사로 경력이 (전문)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50
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(전문)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50
다. 조교 및 체육코치	
① 대학(총)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	50
② 공인된 체육단체(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)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	50
2. 연구경력	
가. 최종학위 취득자	
①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	석·박사과정 재학년수(석·박사과정을 포함하되,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)
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그 연구경력	석사과정 재학년수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)
나. 최종학위과정 수료자 등	
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. 단,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	박사과정 재학년수(석·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)×0.7

경 력 내 용	환산인정률(%)
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	석사과정 재학년수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)×0.7
다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	
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(실험실습을 포함한다)를 대학·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 경력	100
라.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	
① 국가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	100
② 기타 대학 부설 연구소 및 산업체 연구경력	30
3. 산업체 등 근무경력	
가. 국가기관등 근무경력	
①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근무경력포함)에서 당해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70
②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	70
③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에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60
나. 민간기업체등 근무경력	
① 공과계대학(공업교육대학, 공업교육학과 포함)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◦ 대기업체 등 ◦ 중기업체	50
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	50
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	50
④ 대학(전문대학포함)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◦ 대기업체 등 ◦ 중기업체	50
다.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	
① 판사·검사로 근무한 경력	70
② 변호사 개업기간	70
③ 공인회계사·세무사·공인감정사·토지평가사·변리사 개업기간	50
④ 한국해양대학, 부산수산대학,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항해사(기관사)이상 면허 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, 항공대 졸업자 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	100
라. 의사등 근무경력	
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	50
② 의과대학 졸업자의 (한)의원 개업기간	50
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사	70
④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경력	50

경 력 내 용	환산인정률(%)
마. 성직자 근무경력 ①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 한 경력 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 한 경력	50 50
바.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	
사. 예·체능 관련단체 주요 임원 ① 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, 실기에 관한 국립단체 주요간부 ② 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, 실기에 관한 국립단체 일반단원 ③ 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, 실기에 관한 시립단체 주요간부 및 일반단원	70 50 30

나. 교원경력 소요년수표<개정 2013.12.4>

구 분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
대 학 교 수	4	6	10	5	8	13
대학 부교수	3	4	7	4	6	10
대학 조교수	2	2	4	3	4	7
조 교	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					

※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음.